

의안번호	제 666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6
----------	-----

제출연월일 : 2014. 6.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청원군 통합 청주시가 2014. 7. 1.부로 출범됨에 따라 학원 시설 규모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학원 시설규모 개정(별표1)

※ 현행규정: 시지역(충주시·제천시는 군지역 적용) 90㎡이상, 군지역 60㎡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2. 14. ~ 3. 6.):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을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청주시의 읍·면,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군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원군 지역에 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등록이 신청되어 처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군지역의 학원 시설규모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학원시설규모</p> <p>※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보통교과목을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무용, 실용외국어 회화를 제외한다)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 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u>충주시, 제천시</u> 지역은 <u>기타지역</u> 시설규모를 적용함.</p>	<p>[별표 1] 학원시설규모</p> <p>※ -----</p> <p>-----</p> <p>-----</p> <p>-----</p> <p>-----</p> <p>-----</p> <p>----- <u>청주시의 읍·면, 충주시, 제천시</u> 지역은 <u>군 지역</u> 시설규모를 적용함.</p>

(개정 전)

[별표 1]

학원 시설 규모(제2조의4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사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보충학습, 논술	시지역 90㎡ 이상 군지역 60㎡ 이상	
			기숙학원	별표 3과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9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 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 는 시설	시지역 120㎡ 이상 군지역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 동	별표2와 같음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 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 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 예,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 노조율	"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 장, 세탁	"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 비자전문상담,	60㎡이상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일 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 무원,	별표2와 같음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60㎡이상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 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별표 2와 같음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character), 관광	"	
		간호보조 기 술	간호조무사	"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매	60㎡이상	
	주산		별표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90㎡이상	
	인문 사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 예, 만화, 모델, 미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웅변, 화술	60㎡이상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 서실	시지역 120㎡이상 군지역 60㎡이상	

※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보통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무용, 실용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

(개정 후)

[별표 1]

학원 시설 규모(제2조의4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사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보충학습, 논술	시지역 90㎡ 이상 군지역 60㎡ 이상	
			기숙학원	별표 3과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9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 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 는 시설	시지역 120㎡ 이상 군지역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 동	별표2와 같음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 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 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 예,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 노조율	"	
		산업 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 장, 세탁	"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 비자전문상담,	60㎡이상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작업기술	일 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 무원,	별표2와 같음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60㎡이상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 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별표 2와 같음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character), 관광	"	
		간호보조 기 술	간호조무사	"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매	60㎡이상	
	주산		별표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90㎡이상	
	인문 사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 예, 만화, 모델, 미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웅변, 화술	60㎡이상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 서실	시지역 120㎡이상 군지역 60㎡이상	

※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보통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무용, 실용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청주시의 읍면,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군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

관계법령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 [법률 제11624호, 2013.1.23.]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청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

[시행일 : 2014.7.1] 제2조

부칙 <제11624호, 2013.1.23>

제4조(중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 교육부공고 제2014-2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그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법률 제12128호, 2013. 12. 30. 공포 시행)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14.7.1. 청주시 출범에 따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을 폐지하려는 것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14.2.7.] [충청북도조례 제3634호, 2014.2.7.]

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